

**「편리한 연말정산」
사 용 자 매 뉴 얼**

2021. 1.

목 차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30
III.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50
IV. 간편제출하기	59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1.25일은 부가세신고 마감일로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일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5.31일
 • 간편제출하기 : 3.10일
 • 예상세액 계산하기 : 5.31일
 • 맞벌이 절세 안내 : 5.31일

주요 서비스 안내

-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제출하기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부가 서비스 안내

- 동영상 따라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 키워드 연말정산
- FAQ
- 근로자용 매뉴얼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 126 ➡ 1 ➡ 5
- 자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1 ➡ 3 ➡ 2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 2 ➡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자료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작성 | 연말정산 챗봇

* 귀속년도: 2020년 | 전체결제: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한번에 내려받기 | 한번에 인쇄하기 |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395,64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2,485,160	보험료 (Insurance) 1,711,200	의료비 (Medical Expenses) 5,363,48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6,515,833	신용카드 (Credit Card) 27,712,179	직불카드 등 (Debit Card) 2,786,35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336,020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7,850,000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11,225,564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2,400,000	장기장한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6,000,00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3,600,000	기부금 (Donation) 220,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기본내역 | 상세내역확인 | PDF다운로드 | 인쇄하기 | 현금영수증 안내

인별 선택	인별 선택	사용자	종류	공제대상금액
☒	☒	김국세	일반거래	234,500
☒	☒	김국세	전통시장거래	70,100
☒	☒	김국세	대중교통거래	15,400
☒	☒	김국세	도서, 공연비등거래	15,020
인별합계				336,020 원
선택 4 건				선택합계 336,020 원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HomeTax logo and links for '조회/발급' (Search/Issuance), '민원증명' (Public Certificate), '신청/제출' (Application/Submission), '신고/납부' (Declaration/Payment), and '상담/제보' (Consultation/Report). Below this, a breadcrumb trail shows '연말정산간소화'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 '근로자' (Employee)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Income and Tax Credit Data Search/Issuance).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1 is placed over the '공제신고서작성' (Declaration Form Creation) button in the top righ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Income and Tax Credit Data Search). It includes a sidebar with various tax categories and a main area with a '공제신고서 작성' (Declaration Form Creation) window. This window contains instructions and a form to select a company. A red box with the number 2 is placed over the '회사선택' (Company Selection) dropdown menu. Another red box with the number 3 is placed over the '공제신고서 작성' (Declaration Form Cre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window.

-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조회/발급

연말정산

바로가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김국세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연말정산 콧보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쳐기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기본)	출산입양	
☐	소득자 본인	내국인	김국세	740408-2...	Y	N	N	N	N	N	N	N
☐	배우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김금중	460228-1...	Y	N	N	Y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N	N	N
☐	배우자	내국인	박만쌍	571113-1...	Y	N	N	N	N	N	N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우연	030315-4...	Y	N	N	N	N	Y	N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지민	981101-2...	N	N	N	N	N	Y	N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도경	190102-3...	Y	N	N	N	N	N	선택	선택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협제안내

3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은 추가하거나 새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액은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김국세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2

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간편제출하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필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1

●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김국세	주민등록번호	740408-*****
근무처 명칭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사업자등록번호	211-85-61676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KR)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감면기간	2020.03.01 ~ 2020.05.01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1. 간편제출하기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간편제출하기' (Easy Submission) process. The '제출하기' (Submit)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The '동의함' (I agree) checkbox is checked.

The bottom screenshot shows a confirmation dialog box. The '확인' (Confirm)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The dialog box contains the following text:

필 페이지 메시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도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을

확인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5. 기본사항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Step.01 기본사항 입력** | Step.02 부양가족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①

·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순서에 따라 작성한 후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총급여를 입력해야 이용 가능)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액 등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으로 확인 가능하며, 회사가 총급여액 등 자료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전)근무자의 총급여액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 가능)

김국세 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③ 공제신고서 초기화 | 연말정산 책봉

● 기본사항 입력

●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740408-*****	소득자 성명	김국세
사업자등록번호	211-85-61676	수정	중전사업장추가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근무처 명칭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국적	KR 대한민국 선택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선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120% ☒ 100% ☐ 80% ※ 선택가능	분납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대 동일 ☐ 변동		
총급여	46,060,000 원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 ④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Step.01 기본사항 입력'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 ②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중(전)사업장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중(전)사업장 추가는 사업자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 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5-1.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 근무지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결제안내를 이용하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현)근무지 (단위 : 원) **2**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1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비고	연금보험료합계금액
☒	101-82-*****	확인	다침완선 공여용...	42,000,000	간편제출 자료	1,830,000

중(전)근무지 자료 3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보험료합계금액
☐	111-11-11111	확인	아름이다름이	5,000,000	100,000

4 반영하기 닫기

-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①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①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②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중(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중(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 ④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부양가족 확인(5p와 동일한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Step.01 기본사항 입력 | **Step.02 부양가족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김국세님 | 〈주〉알라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 연말정산 첫보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 부양가족 추가 |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기본)	출산입양
☐	소득자 본인	내국인	김국세	740408-2...	Y	N	N	N	N	N	N
☐	배우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김금중	460228-1...	Y	N	N	Y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N	N
☐	배우자	내국인	박만쌍	571113-1...	Y	N	N	N	N	N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우연	030315-4...	Y	N	N	N	N	Y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지민	981101-2...	N	N	N	N	N	N	N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김도경	190102-3...	Y	N	N	N	N	N	셋째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출생·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

7.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와 회사가 미리 제출한 '근로자 기초자료(4대보험, 일괄 기부금 등)'는 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 공동의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공제신고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는 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는 금융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국세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공제신고서 초기화

연말정산 헛물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소득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 연금보험료공제	수정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외 공적연금보험료		0	0	0
☐ 특별소득공제		2,899,983	1,126,436	4,026,419
- 국민건강보험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보험		0	100,000	100,000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수정	2,218,043	26,436	2,244,479
- 대출기관		2,218,043	26,436	2,244,479
- 거주자		0	0	0
- 정기주택자담차입금이자상환액	수정	681,940	900,000	1,581,940
개인연금저축	수정	2,400,000	100,000	2,500,000
주택마련저축	수정	640,000	100,000	740,000
신용카드	수정	1,761,436	1,600,000	3,361,43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수정	5,800,000	100,000	5,900,000
☐ 그 밖의 소득공제(기타)		1,700,000	900,000	2,600,000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수정	1,700,000	100,000	1,800,000
- 투자조합출자 등	수정	0	600,000	600,000
- 우리시주조합 출연금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수정	0	100,000	100,000

세액감면 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 연금계좌	田 수정	0	400,000	400,000
- 과학교육인공제		0	0	0
- 퇴직연금		0	200,000	200,000
- 연금저축		0	200,000	200,000
☐ 특별세액공제		9,804,710	1,500,000	11,304,710
☐ 보험료	田 수정	813,080	200,000	1,013,080
- 보장성		813,080	100,000	913,080
- 장애인전용보장성		0	100,000	100,000
☐ 의료비	田 수정	1,378,000	200,000	1,578,000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1,378,000	100,000	1,478,000
- 그 밖의 공제 대상자		0	100,000	100,000
☐ 교육비	田 수정	7,611,630	100,000	7,711,630
- 소득자 본인		1,810,590	0	1,810,590
- 취학전 아동(0명)		0	0	0
- 초·중·고등학교(3명)		5,801,040	0	5,801,040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0명)		0	0	0
- 장애인(1명)		0	100,000	100,000
☐ 기부금	田 수정	2,000	1,000,000	1,002,000
- 정치자금기부금		0	0	0
- 법정기부금		0	1,000,000	1,000,000
- 우리사주기부금		0	0	0
- 지정기부금 총교외		2,000	0	2,000
- 지정기부금 총교		0	0	0
월세액	田 수정	0	5,000,000	5,000,000
주택차입금	田 수정	0	563,635	563,635
세액감면	田 수정			
외국납부세액	田 수정	0	3,563	3,563

이전

다음이동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田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8.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연금보험료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간소화 자료 납입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1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국민연금	-	-	1,500,000	0	5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로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	-	0	0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	-	0	0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	0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 연금	-	-	0	0	0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연금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보험료

간소화 자료 금액

* 소득월액 : 0 원, 보수월액 : 1,456,75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1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건강보험료	-	-	1,000,000	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	0	0	1,20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원천징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구분	1 국세청자료	2 국세청자료 차감	3 기타	상환액 합계
대출기관	600,000	0	600,000	1,200,000
거주자	0	0	5,000,000	5,000,000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시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원
어후호	800318-*****	2019-10-01	2019-10-26	6	5,000,000	

- 2) 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임대인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계약기
어후호	800318-*****	단독주택	85	세종시	2018-10

반영하기 닫기

-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2주택 보유 여부 등 소득공제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 이므로 하단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으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시기	상환기간-방법	한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자료	합계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0	0	0	0
	15년~29년	1,000만원	0	0	0	0
	30년 이상	1,500만원	0	0	0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1,500만원	4,840,924	0	0	4,840,924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0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 거치식	1,8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1,5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0	0
	10년 ~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 거치식	300만원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상환기간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상환 차입금	당해년원금 상환액	최초 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
장박말완차...	해당없음	160,00...	160,00...	0	0	2014-12-18	2034-12-18	20년	201

※이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연장, 전환) 관련내용 펼치기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한도 : 72만원)
 ※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한	00	1,041,000	0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새마을금고	00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차감금액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국민은행		2007-07-18	240,000	0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2009-06-01	400,000	0

• 기타 자료

선택	주택마련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새마을금고		2017-01-02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공제대상자		소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자	자료구분		3월	4~7월	그 외	3월	4~7월
□	김국세	국세청자료	15,626,438	64,030	4,165,461	7,463,689	38,300	2,162,280
□	박만상	국세청자료	15,208,111	1,173,360	6,339,196	6,842,015	0	0
□	김국세	기타자료	0	0	0	0	0	0
합계			30,834,549	1,237,390	10,504,657	14,305,704	38,300	2,162,280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 공제대상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한 후 차감할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감할 금액을 -1,000,000 형식으로 입력)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 경우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 값을 입력합니다.
 - * 현금영수증도 '-' 값 입력 가능
 - * 월별 신용카드 합계액이 '-'금액이면, 간소화 조회시 0원을 적용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각의 원래의 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산림조합	99999999	540,000	0
☐	(주)제주은행	88888888	41,961	41,961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중국건설은행	6565	2,156,140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요약설명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공제 금액
(단위 : 원)

구분	납입금액	차감금액
국세청자료	3,000,000	0
기타자료	3,000,000	0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연금계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548576	321,344	0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국건설은행	8798uihgdbfb	454,657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무라금융투자	54354354		1,651,561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연금저축	KEB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하나)	t23f3f32f32	4,324,546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연금저축	산림조합	654uyeg43g4		561,619
☐	연금저축-연금저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기관	r32rf3f34g42f932		432,432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보험료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료 내역에 반영됩니다.

· 보험료 내역

□	피보험자	자료구분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자료 차감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840,040	0	0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550,464	0	0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572,212	0	0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1,869,600	0	0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774,000	0	0
☐	왕왕가 ▼	국세청자료 ▼	118,800	0	0
☐	머추호 ▼	기타자료 ▼	0	1,200,000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의료비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쳐기

- ▶ 간소화서비스에서 1.20.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국세청자료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를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하여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상호	건수	지출액	국세청차감액
☐	왕왕가	국세청장이 제정하는 의	본인	일반의료비	양자***	1	4,500	0
☐	왕왕가	국세청장이 제정하는 의	본인	안경구입비	판도****	1	545,100	0

※ 안경구입비는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초과 출산의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지급처 사인·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지출액
☐	왕왕가	기타 의료비 영	본인	일반의료비	105-82-45783	확인 (기) 너함...	1	100,000

- 실손의료비 차감액(공제제외금액)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차감액에 입력하지가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공통의를 받은 부양가족이라도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대상자	실손의료비 차감액
☐	왕왕가	378,000

▶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은 0원 입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부양가족별로 실손의료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재학 중인 학교 등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피교육자	자료구분	공제종류	공납금	공납금 차감액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차감액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 차감액
	마차티	국세청 자	초,중,고등학교	432,457	0	0	0	0	0
	마차티	기타 자료	초,중,고등학교	0	0	300,000	0	200,000	0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50만원 한도)와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3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교복구입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기부 명세

	자료구분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상호(성명)
					사업자(주인)등록번호		
☐	국세청 자료	법정기부금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솔약품
☐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지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솔약품
☐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지정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솔약품
☐	기타 자료	---선택---	금전	---선택---		확인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종류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210,000	210,000	0	0	0	0	0
법정기부금	60,000	60,000	0	0	0	0	0
종교단체지정...	80,000	80,000	0	0	0	0	0
종교단체외지...	70,000	70,000	0	0	0	0	0

***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	2017	60,000	0	60,000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	2017	70,000	0	70,00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7	80,000	0	80,000
☐	---선택---		0	0	0

이월분 입력 이월분 조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0%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2%

· 국세청 자료

□	임대인성명 (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
□	한국토지...	128-82-11719	단독주택 ▼	10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오피스텔 541동 605호	2020-09-01	2021-C

선택내용 삭제

(단위 : m², 원)

· 기타 자료

□	임대인성명 (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			확인	---선택--- ▼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m², 원)

반영하기

닫기

※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세액감면

기타세액공제 및 감면
✕

기타세액공제 작성방법 펼쳐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단위 : 원)

항목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2,000

▶ 세액감면 (단위 : 원)

입국목적	☒ 정부간협약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 조세조약상감면		
외국인 근로자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2020-08-01	감면기간 만료일 2020-12-19	감면세액 (50%)	0
				감면세액 (70%)	0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2020-01-01	제출일 2020-02-28	감면세액	5,000,000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감면세액	0

▶ 조특법(중소기업) (단위 : 원)

	취업일(감면기간 시작일)	2020-03-01	감면기간 종료일	2020-05-0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급여 (100%)	0	감면대상급여 (50%)	0
	감면대상급여 (70%)	0	감면대상급여 (90%)	100,000

※ 감면대상 급여는 회사가 입력한 금액 단순 확인용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특법(기타) (단위 : 원)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감면	경영성과급 지급금액 (50%)	100,000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50%)	100,000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지급금액 (50%)	100,000

▶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위 : 원)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원화)	0		
	납세액(원화)	0		
	납세액(원화)	0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 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반영하기
닫기

- 중소기업취업자감면과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은 회사가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6p와 동일한 화면)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산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질서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액공제액은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김국세님 |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설문조사 가기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 챗봇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김국세	주민등록번호	740408-*****
근무처 명칭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사업자등록번호	211-85-61676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감면기간	2020.03.01 ~ 2020.05.01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변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①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03으로 이동하여 지출 금액을 수정합니다.

②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③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1. 간편제출하기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간편제출하기' (Easy Submission) process. The '제출하기' (Submit)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The '동의함' (I agree) checkbox is checked.

The bottom screenshot shows a confirmation dialog box. The '확인' (Confirm)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The dialog box contains the following text:

필 페이지 메시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도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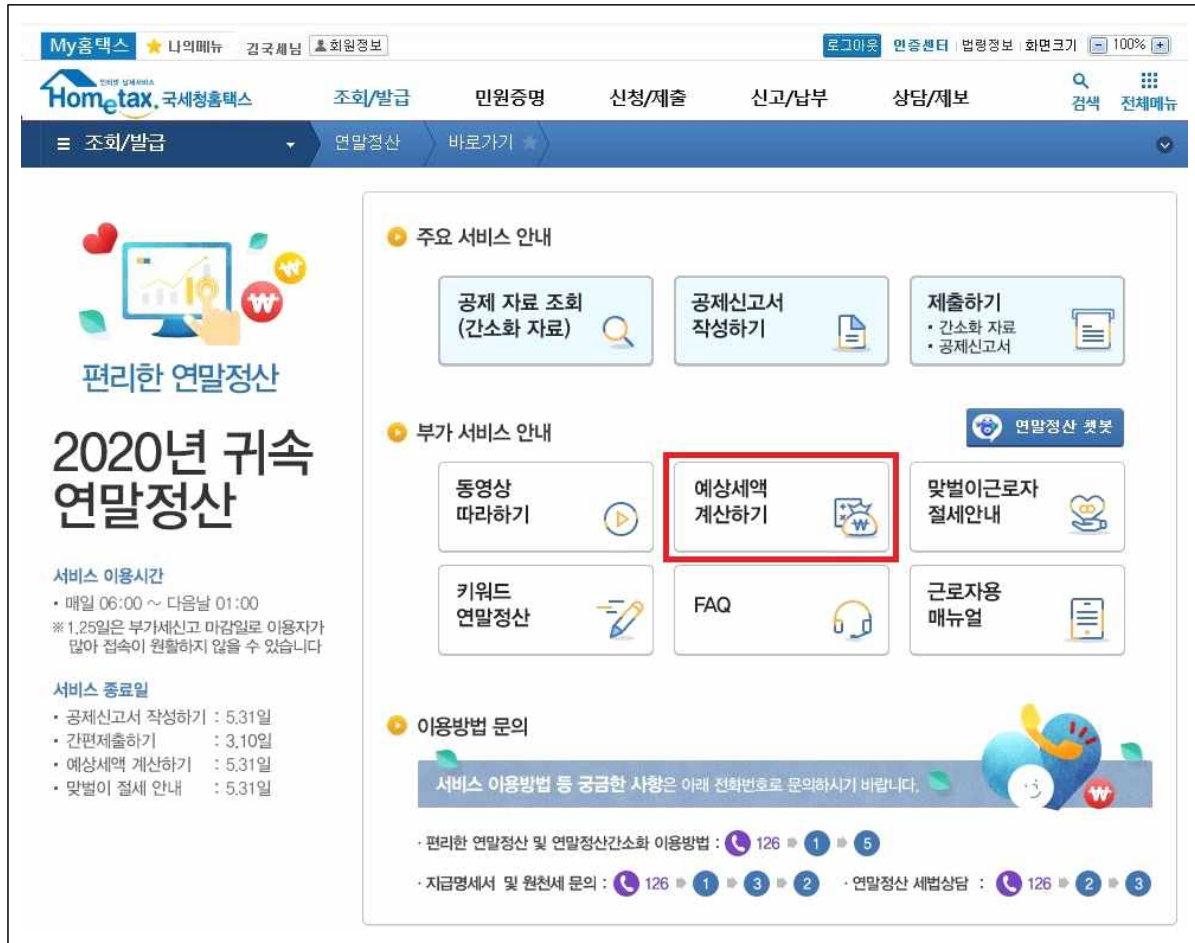
확인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ax calculation.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조회/발급' (Search/Issue), '연말정산' (Year-end Settlement), and '바로가기' (Shortcut). Below these, there's a section for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Income and Tax Credit Data Search). A red circle highlights the '간소화자료 조회' (Simplified Data Search) button, and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예상세액 계산' (Estimated Tax Calculation) button. The main area displays various tax categories like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Premiums),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an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etc.). A modal dialog box titled '예상세액 계산하기' (How to Calculate Estimated Tax) is open, containing instructions and a list of items to be calculated. The dialog box has a close button (X) and a '예상세액 계산' (Calculate Estimated Tax) button, which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number 2. The background interface shows a summary of income and tax credits, with a total of 27,712,179 and a tax credit of 2,786,350.

예상세액 계산하기

귀하께서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 현금영수증
☒ 국민연금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보험료	☒ 주택자금/월세액
☒ 의료비	☒ 주택마련저축
☒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학자금대출	☒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 신용카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직불카드 등	☒ 기부금

2 **예상세액 계산** 닫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서비스 종료일 : 5.31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세액 계산하기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이용안내](#) [도움말](#) [연말정산 챗봇](#)

!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된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추가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3개년 추이와 유의 사항 등을 보여드립니다.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원가자만으로도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가능**

Step.01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활용하여 직접 **총급여 · 기납부 소득세 · 기타 공제항목** 등을 추가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총급여액 등을 등록하면 자동 반영할 수 있음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근로자가 Step.01에서 계산한 내역과 과거 2개년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3개년 신고 추이와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 교복, 보험기 구입비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나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반영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세법상 공제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확정한 공제금액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 126 ➡ 1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1 ➡ 3 ➡ 2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 2 ➡ 3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 ·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처 선택

- '18~'20년도에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

예산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예산세액 계산하기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Step.01 세액계산하기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없어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산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산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능)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간소화자료 가져오기 | 회사등록 기초자료반영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수정 |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보기

①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수) 주미초박 방법금미산 반영하기
 ②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산세액 계산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③ 급여 및 예산세액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와 소득세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미리 채워줍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기본사항 (단위 : 원)

총급여	① 42,000,000	계산하기 ②
근로소득공제(자동계산)	11,550,000	
근로소득금액(자동계산)	30,450,000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③ 2,432,100	
농어촌특별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0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초기화 | ④ 적용하기 | 닫기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

※ *클릭하면 그룹별 상세항목이 펼쳐지며,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단위 :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 금액	소득공제액 (원)	공제한도 (원)	한도미달액 (원-원)
인적공제	① 수월	-	6,500,000	-
기본공제	-	-	4,500,000	-
추가공제	② 수월	-	2,000,000	-
연금보험료공제	③ 수월	2,000,000	0	-
특별소득공제	13,741,924	10,021,924	-	-
간접보험료 등	④ 수월	2,701,000	2,701,000	-
주택자금	⑤ 수월	11,040,924	7,320,924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1,200,000	480,000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5,000,000	2,000,000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4,840,924	4,840,924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
주거임차	-	-	-	-
가입금 및	-	-	-	-
리금융채	-	-	-	-
대출가입	-	-</		

○ 인적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인적공제(기본 및 추가) 상세자료 입력

기본공제

기본공제설명 펼치기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 받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

항목	금액
본인기본공제	1,500,000
배우자공제	1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0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1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그외	0
형제자매	0
부양가족공제 수급자	0
부양가족공제 위탁아동	0

추가공제

추가공제설명 펼치기

항목	금액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	0
장애인공제	1
부녀자공제	예
한부모공제	예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①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②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③ 입력이 끝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보험료공제 상세자료 입력

연금보험료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2,000,000	0
공무원연금 보험료공제	0	0
군인연금 보험료공제	0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공제	0	0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공제	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등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상세자료 입력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1,500,000	1,5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1,201,000	1,20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상세자료 입력

✕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금)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1,200,000	480,00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5,000,000	2,000,000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이전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한도)	0
	15년~29년 (1,000만원한도)	0
	30년 이상 (1,500만원한도)	0
2012년이후차입분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4,840,924
	기타대출 (500만원한도)	0
2015년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0
	15년 이상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0
	그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0
	10년 ~ 15년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상세자료 입력

✕

·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00,000	720,00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상세자료 입력

*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투자조합출자공제 2018년	조합등투자금액 (10%)	333	33
	벤처투자금액 (100%, 70%, 30%)	444	444
투자조합출자공제 2019년	조합등투자금액 (10%)	111	11
	벤처투자금액 (100%, 70%, 30%)	222	222
투자조합출자공제 2020년	조합투자금액 (10%)	0	0
	벤처투자금액 (100%, 70%, 30%)	579	579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상세자료 입력

×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신용카드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1,237,390	10,504,657	14,305,704
@직불카드등(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38,300	2,162,280	552,720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0	225,500	9,00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61,350	378,848	437,590
	@직불카드사용분	0	0	0
	@현금영수증사용분	0	16,020	0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59,000	268,000	329,530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6,020	114,910	127,73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상세자료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2,000,000	28,07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738,101	0

항목	임금삭감액	공제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3,543,54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4) 세액감면·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단위 :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 금액	세액공제액 (①)	공제한도 (②)	한도미달액 (②-①)
세액감면	田 수정 ① -	0	-	-
근로소득	-	0	-	-
☐ 자녀	田 수정 ② -	0	-	-
- 자녀	-	0	-	-
- 출생입양	-	0	-	-
☐ 연금계좌	田 수정 ③ 7,746,159	0	-	-
- 퇴직연금계좌	2,427,562	0	-	-
- 연금저축계좌	5,318,597	0	-	-
☐ 특별세액공제	26,560,815	0	-	-
- 보장성보험료	田 수정 ④ 5,925,116	0	270,000	0
- 의료비	田 수정 ⑤ 11,405,260	0	-	-
- 교육비	田 수정 ⑥ 1,340,547	0	-	-
- 기부금	田 수정 ⑦ 7,889,892	0	-	-
- 표준세액공제	-	0	-	-
납세조합공제	田 수정 ⑧ 0	0	-	-
주택차입금	田 수정 ⑨ 7,856,754	0	-	-
외국납부세액	田 수정 ⑩ 87,689,760	0	-	-
월세액	田 수정 ⑪ 4,505,563	0	900,000	0
소계	-	0	-	-

계산하기

계산결과상세보기

저장

초기화

- ① ~ ⑪ 세액 감면·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합니다.

○ 세액감면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세액공제 세액감면 상세자료 입력

세액감면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참고하여 '감면대상금액'을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단위 : 원)

항목	감면대상금액	감면세액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	2,000,000	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등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0
	1,000,00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자녀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자녀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자녀 세액공제

항목	공제인원	공제액
자녀	1 명	0 원
출생입양	☐ 첫째	0 원
	☐ 둘째	0 원
	셋째 이상 0 명	0 원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7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공제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출생 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 혹은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액)		0	0
퇴직연금(납입액)	☐ 50세 이상	1,200,000	0
연금저축(납입액)		5,010,00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50세 이상 여부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보험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4,725,116	0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1,200,00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의료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의료비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대상금액을 기준하여 단순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세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① 난임시술비	10,000,000
②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905,260
③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료비 지출액	500,00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10,145,260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자동계산)	2,021,789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②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③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교육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교육비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 교육비 지출액(공제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공제종류	공납금	교육비구입	체험학습비
미취학아동 교육비	432,457	0	0
소득자본인	908,090	0	0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하기 (단위 : 원)

항목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1,340,547
교육비 세액공제액(자동계산)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①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하고 공제 종류, 공납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30만원 한도임.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계산된 값은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어 계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금액			공제금액
			회사자료	국세청자료	기타	
□	정치자금기부금	2020	0	20,000	0	0
□	법정기부금	2013	0	0	1,000	(소득공제)1,000
□	법정기부금	2017	0	0	10,000	0
□	법정기부금	2018	0	0	10,000	0
□	법정기부금	2020	50,000	160,000	0	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2020	30,000	30,000	0	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2020	40,000	10,000	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기준이 2014년~2015년 이월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5%, 2016년~2018년 이월 기부금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019년~당해년도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 대상임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13년 지출 분부터 이월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함.

○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타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기타세액공제

(단위 :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등	공제세액
납세조합공제 공제세액	0	0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7,856,754	0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87,689,760
	국외 총급여	5,435,436
월세액 지급액	4,505,563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공제대상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세액계산하기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1

2

3

4

5

6

7

8

9

연말정산 요약

왕왕가남은 2018년에 비해 출금여가 20,834,50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8,995,478원 증가, 과세표준은 11,839,022원 증가, 세액공제 1,003,966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423,69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⑨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연도별 현황

(단위 : 원)

귀속년도	사업자번호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정수세액
2016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19,936,980	0	133,180	-133,180
2017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19,165,500	0	129,700	-129,700
2018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40,000,000	423,699	2,000,000	-1,576,300

※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매달 내는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달 내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80% or 100% or 120%)할 수 있으나,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비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막대 그래프 ○ 꺾은선 그래프



세부담 현황

(단위 : 원)

· 왕왕가님의 2019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명목상 세율은 15.00%이지만, 실제 부담하시는 세율(실효세율)은 2.12%입니다.

귀속년도	과세표준	결정세액	명목세율(%)	실효세율(%)
2017	7,557,200	0	6.00	0.00
2018	8,131,238	0	6.00	0.00
2019	19,970,260	423,699	15.00	2.12

※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입니다.

● 막대 그래프 ○ 꺾은선 그래프



공제항목별 현황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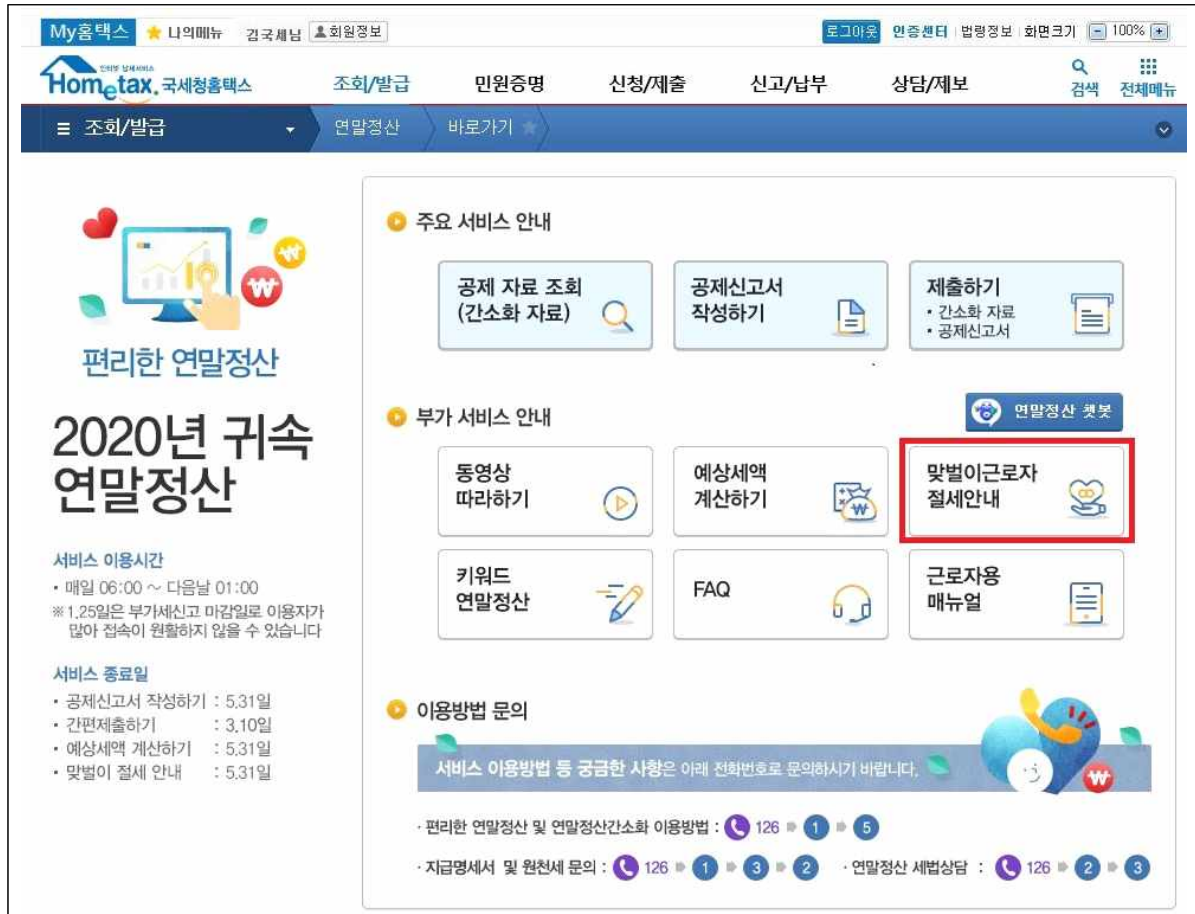
귀속년도	기본공제 합계	추가공제 합계	연금보험료공제 합계	특별소득공제 합계	그밖의 소득공제 합계	세액감면·공제 합계
2017	1,500,000	500,000	397,140	796,590	435,503	453,432
2018	1,500,000	500,000	0	753,420	156,017	487,874
2019	3,000,000	0	2,384,100	395,640	3,000,000	1,491,840

● 막대 그래프 ○ 꺾은선 그래프



Ⅲ.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서비스 종료일 : 5.31일

이용안내 도움말

연말정산 챗봇

이 서비스는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고,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Step.01

Step.0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수정 없이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여야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당초 계산한 예상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의 사항

-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입력한 공제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총급여,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반드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정확한 절세 효과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합니다.**(다른 소득으로 인한 세율 구간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달라짐)
- 이 서비스 안내결과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추가로 하여야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정해 줄 수 없음)
-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항목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가기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려는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출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용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으며, 공제신고서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출부담세액)과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 그 차액만 안내합니다.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

②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성명

왕왕가

관계

배우자

본인(왕왕가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③

동의하기

제공동의 완료된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 신청일자	제공동의 상태
머*호	800318*****	2018/12/20	동의완료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 부터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해당 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나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 3 신청제출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산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산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 ① ② 배우자주민등록번호 -

③ **조회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가기 |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 어*호 배우자주민등록번호 800318 - ●●●●●● **1**

※ 어*호(배우자)님이 왕왕가(본인)님에 대해 공제신고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습니다. **2**

본인	공제신고서 완료	3
배우자	공제신고서 완료	

4 다음단계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조회/발급](#)
[인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도](#)

≡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
2 (근로·사업등)지급명...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하면 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하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하기](#)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 목록조회

본인(왕왕가)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조회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graph LR
    A[안내하면 가기] --> B[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B --> C[공제신고서 작성]
    C --> D[간편제출]
    C --> E[예상세액 계산]
    E --> F[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F --> D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for dual-earner families to claim tax benefits. It starts with '안내하면 가기' (Go to Guide), followed by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Select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materials), then '공제신고서 작성' (Fill out deduction claim form). From '공제신고서 작성', the process can proceed to '예상세액 계산' (Calculate estimated tax) and then to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Dual-earner family tax savings guide), or directly to '간편제출' (Simple submission). The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box also leads to '간편제출'.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존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존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기존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기존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세액상제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생여, 4대 보험, 기업부설액 등이 빠졌음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산동육아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고, 부양가족을 공통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엑셀다운로드

	본인(왕왕가)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왕*군				
사례 2		왕*군			

계산하기

- 56 –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5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예산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하기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인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2018/12/20) /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2018/12/20)

엑셀다운로드

부양가족 목록조회

	본인(왕왕가)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왕*군		0	0	0
사례 2		왕*군	0	1,050,000	1,050,000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가기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취소

배우자에게 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 ②

➤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성명	왕왕가	관계	배우자
본인(왕왕가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			

③ 동의 취소하기

➤ 제공동의 완료된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 신청일자	제공동의 상태
어*호	800318*****	2018/12/20	동의완료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을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IV.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1.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한 후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Simplified Data Online Submission) window. The window contains a list of tax items with checkboxes, a '근무처 선택' (Select Workplace) dropdown menu, and buttons for '간편제출' (Simplified Submission) and '닫기' (Close). Red circles and boxes highlight the '간소화자료 제출' button in the top navigation bar, the '간편제출' button, and the '근무처 선택' dropdown menu.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본 서비스는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학자금대출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주택자금/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근무처 선택

간편제출

닫기

○ 간소화 제출 동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바로가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소득 계산

맞벌이 근로자 월세안내

간편제출

간편제출하기

설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경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연말정산 켜짐

제출처(사업자번호)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211-85-61676)

제출일자	2021-01-14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	------------	------	----------	------	--

자료제공동의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제출

- 제출처 확인후, 자료 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 60 -

○ 간소화 제출이력

≡

조회/발급

연말정산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간편제출

간편제출하기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사(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준사항

연말정산 헛봉

제출처(사업자번호)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제출일자

2021-01-14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간소화자료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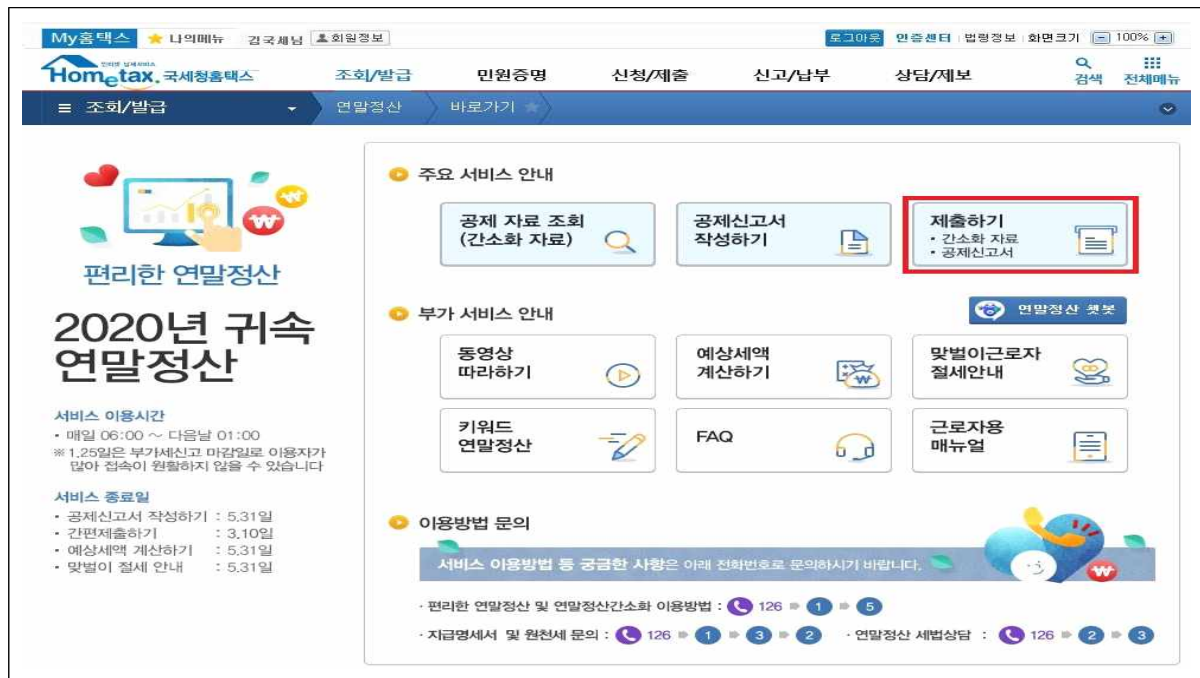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4 12:06:09	간소화PDF제출	간소화자료제출

- 간소화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력사항에는 간소화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이 함께 관리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은 회수 없이 다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제출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회수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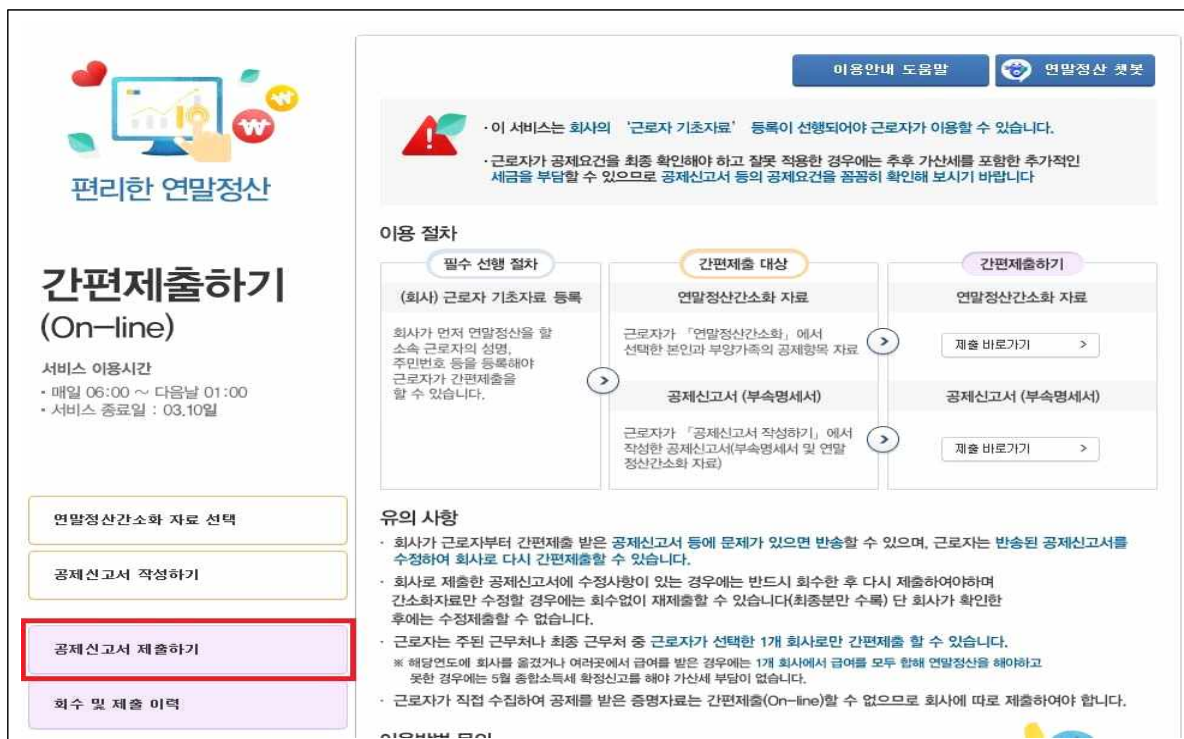
3.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에서 「제출하기」를 선택



○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 위한 공제신고서 회수가 가능하며, 제출한 인력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료제공동의의 '□ 동의함'에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 제출처를 확인한 후, 자료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산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질서안내

간편제출

간편제출하기

전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장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금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산세액 결과보기

연말정산 폼보

제출처(사업자번호)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상태
2021-01-14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자료제공동의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제출

- 제출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산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질서안내

간편제출

간편제출하기

전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장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금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산세액 결과보기

연말정산 폼보

제출처(사업자번호)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상태
2021-01-14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4 12:54:17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2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4 12:06:09	간소화PDF제출	간소화자료제출
3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7:13:5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4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6:57:52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5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6:54:2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 회사에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및 제출 이력’ 화면을 선택합니다.



간편제출하기 (On-line)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서비스 종료일 : 03.10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회수 및 제출 이력

이용안내 도움말
연말정산 챗봇

· 이 서비스는 회사의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선행되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최종 확인해야 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서 등의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을 할 소속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등록해야 근로자가 간편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 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 자료

→

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바로가기 >

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

유의 사항

- 회사가 근로자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송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회사로 다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간소화자료만 수정할 경우에는 회수없이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최종분만 수록) 단 회사가 확인한 후에는 수정제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연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공제를 받은 증빙자료는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회수」 한 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회사가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취소’를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한 경우 「회수」 없이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받아 근로자 일제안내

설문조사 가기

간편제출하기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 회사(공수외무자)에서 확인 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연말정산 챗봇

제출처(사업자번호)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11-85-61676)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상태
2021-01-14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4 12:54:17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2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4 12:06:09	간소화PDF제출	간소화자료제출
3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7:13:5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4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6:57:52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5	211-85-61676	(주) 할리스에프엔비 신논현점	2021-01-13 16:54:2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회수